

「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우리 군 포상 규정을 현실화하고 군민대상 시상 부문을 통합하여 포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실효성 없는 ‘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’ 단어 삭제
- 2) 군민대상 시상부문 통합·축소를 통한 군민대상 가치 제고
- 3) 공적심사위원을 군수가 임명하게 함으로써 공적심사의 탄력성·유연성·시의성 확보
- 4) 그 외 중복되거나 성차별적 요소 및 문구, 띄어쓰기 등 수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현행 포상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
포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,

실효성 없는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을 삭제하고,
군민대상 시상 부문을 통합하였으며,
군수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
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함.

○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고,

법령 제명 등을 맞춤법에 의거하여 정비하였으며,
포상의 실효성 및 가치를 제고하고,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
하려는 데 개정의 취지가 있음.

검토결과,

입법예고에 따른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,

법령 저촉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